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 [관급자재]
○ 발주기관 : 인천광역시(스마트도시담당관)
○ 제조사·공급사 : ㈜엠젠솔루션
○ 대상장비 : 광다중화장치(CE-10000 2식 / CE-3200 3식 / CE-60 52식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[관급자재]에 대하여 **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 사이의 협약**으로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·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**제조사·공급사가** 낙찰자에게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설계설명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**발주기관과 제조사·공급사 간 상호 협의**하여 조정한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**제조사·공급사의** 물품공급·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**발주기관과** 제조사·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749,53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**제조사·공급사는**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·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·공급사는 물품공급·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

2023년 05월 일

발주기관명 인천광역시장 (인)

제조사·공급사명 ㈜엠젠솔루션 (인)